

■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및 부속협정서 개정대비표

[개정시행일 : 2022년 12월 2일, 기존 가입 손님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 적용]

현 행	개 정	개정사유
<p style="text-align: center;"><b>확정기여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b></p> <p><b>제1조 &lt;생략&gt;</b></p> <p><b>제2조(용어의 정의)</b>                      ①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7. &lt;생략&gt;  <u>8. &lt;신설&gt;</u></p> <p><u>9. &lt;신설&gt;</u></p> <p><u>10. &lt;신설&gt;</u></p> <p>② &lt;생략&gt;</p> <p><b>제3조(운용관리업무)</b>                      ① 이 계약에 의해 은행이 수행하는 업무(이 계약에서 "운용관리업무"라 합니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로 합니다.                      1. 가입자에 대한 적립금 운용방법의 제시 및 운용방법별 정보의 제공  <u>&lt;신설&gt;</u>                      2. 적립금 운용현황의 기록·보관·통지                      3. 가입자가 선정한 운용방법을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하는 업무                      4. 가입자의 급여지급 신청, 중도인출 신청을 자산관리기관에 통지하는 업무                      5. 그 밖에 시행령에서 운용관리업무로 정하는 업무                      ② 은행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업무를 법령에서 정한 인적·물적 요건을 갖춘 자에게 위탁</p>	<p style="text-align: center;"><b>확정기여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b></p> <p><b>제1조 &lt;좌동&gt;</b></p> <p><b>제2조(용어의 정의)</b>                      ①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7. &lt;좌동&gt;  <u>8. "사전지정운용제도"란 가입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 사전에 지정한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u>  <u>9. "사전지정운용방법"이란 사전지정운용제도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하기 위하여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운용방법을 말합니다.</u>  <u>10. "현금성 자산"이란 가입자가 제8조에 따른 운용지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 운용방법을 말하며, 자산관리계약에 형태에 따라 보험계약은 금리연동형, 신탁계약은 대기자금 운용을 위해 자산관리기관이 제공하는 운용방법을 말합니다.</u>                      ② &lt;좌동&gt;</p> <p><b>제3조(운용관리업무)</b>                      ① 이 계약에 의해 은행이 수행하는 업무(이 계약에서 "운용관리업무"라 합니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로 합니다.                      1. 가입자에 대한 적립금 운용방법의 제시 및 운용방법별 정보의 제공  <u>2. 사전지정운용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업무</u>                      3. 적립금 운용현황의 기록·보관·통지                      4. 가입자가 선정한 운용방법을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하는 업무                      5. 가입자의 급여지급 신청, 중도인출 신청을 자산관리기관에 통지하는 업무                      6. 그 밖에 시행령에서 운용관리업무로 정하는 업무                      ② 은행은 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를 법령에서 정한 인적·물적 요건을 갖춘 자에게 위탁</p>	<p>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 개정내용 반영</p> <p>현금성 자산의 정의 명확화</p> <p>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8조 개정내용 반영</p> <p>인용조문 변경</p>

현 행	개 정	개정사유
<p>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p> <p>③ &lt;생략&gt;</p> <p>제4~7조 &lt;생략&gt;</p> <p><u>&lt;신설&gt;</u></p>	<p>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p> <p>③ &lt;좌동&gt;</p> <p>제4~7조 &lt;좌동&gt;</p> <p><u>제7조의2(사용자에 대한 사전지정운영방법 정보 제공)</u></p> <p>① 은행은 법 제21조의2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전지정운영방법을 사용자에게 제시하여야 합니다.</p> <p>② 은행은 제1항에 따라 승인 받은 사전지정운영방법의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p> <p>③ 사용자는 은행이 제시한 사전지정운영방법에 대해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규약에 명시해야 합니다.</p> <p>④ 제2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제공하여야 합니다.</p> <p>1. 사전지정운영방법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자산배분현황, 위험·수익구조, 손실가능성 및 과거 수익률  나. 수수료 등 가입자가 부담하는 비용에 관한 사항  다. 예금자보호한도 등 가입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  라. 사전지정운영방법의 적용에 따른 퇴직연금자산의 위험도 변경 가능성  마. 사전지정운영방법의 승인일자 등 승인에 관한 사항</p> <p>2. 법 제21조의3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관한 사항</p> <p>3. 법 제21조의3제6항에 따라 사전지정운영방법이 변경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절차</p> <p>⑤ 은행은 사용자에게 제2항에 따른 사전지정운영방법의 정보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의 형태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합니다.</p> <p>1. 우편 발송  2. 서면 교부  3. 정보통신망에 의한 전송  4.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서 당사자가 합의한 방법</p>	<p>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1조의2, 제21조의3, 시행령 제13조의2, 시행규칙 제8조의4 신설</p>

현행	개정	개정사유
<p><u>&lt;신설&gt;</u></p>	<p><b>제7조의3(가입자에 대한 사전지정운용방법 정보 제공)</b>            ① 은행은 제7조의2 제3항에 따라 규약에 설정된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정보를 가입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② 은행은 제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제7조의2 제4항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하여야 하며, 동조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③ 은행이 제1항에 따른 정보제공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사용자는 가입자에 관한 정보를 은행에 제공해야 합니다.</p>	<p>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1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2 신설</p>
<p><u>&lt;신설&gt;</u></p>	<p><b>제7조의4(가입자의 사전지정운용방법 선정 및 변경)</b>            ① 가입자는 제7조의3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전지정운용방법 중 하나를 본인이 적용 받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합니다.            ② 가입자는 제1항에 따라 선정한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제7조의2 제3항에 따라 규약에 설정된 다른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도, 가입자별로 하나의 사전지정운용방법만 선정해야 합니다.            ③ 제1항에 따른 선정 여부를 불문하고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고 있지 않은 가입자는 은행이 법 제21조의2 제1항에 따라 승인 받은 사전지정운용방법 중 하나를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p>	<p>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1조의4 신설</p>
<p><u>&lt;신설&gt;</u></p>	<p><b>제7조의5(사전지정운용방법의 적용 및 통지)</b>            ① 은행은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선정한 가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 운용방법을 선정하지 않은 경우, 해당 가입자에게 지정한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따라 적립금이 운용됨을 통지해야 합니다.            1. 가입자가 이 제도에 가입하여 최초 부담금이 납입된 날의 다음 영업일            2. 가입자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스스로 선정한 적립금 운용방법의 기간 만료일부터 4주 경과한 날의 다음 영업일</p>	<p>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1조의3 제3~6항, 동법 시행령 제13조의3 신설</p>

현행	개정	개정사유
<p>&lt;신설&gt;</p>	<p>② 은행이 제1항에 따라 가입자에게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운용됨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통지하여야 합니다.</p> <p>1. 2주 이내에 운용방법을 선정하지 아니할 경우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된다는 사실</p> <p>2. 가입자가 선정한 사전지정운용방법에 관한 정보로서 제7조의2 제4항 각 호의 정보</p> <p>3.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된 이후 언제든지 제5항에 따라 다른 운용방법을 선정할 수 있다는 사실</p> <p>③ 가입자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 2주 이내에 운용방법을 선정하지 아니할 경우 은행은 해당 가입자의 적립금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하며, 이 경우 가입자가 스스로 운용방법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선정한 것으로 봅니다.</p> <p>④ 가입자가 제7조의4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선정하지 않은 경우 은행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합니다.</p> <p>1. 가입자가 이 제도에 가입하여 부담금을 납입한 경우 부담금 납입 다음영업일에 현금성 자산으로 투입</p> <p>2. 가입자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스스로 선정한 적립금 운용방법의 기간 만료일 다음 영업일에 현금성 자산으로 투입</p> <p>⑤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가입자는 언제든지 법 제21조에 따라 적립금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p> <p><b>제7조의6(은행의 사전지정운용방법 변경)</b></p> <p>① 은행은 법 제21조의3 제6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전지정운용방법의 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 그 사실을 변경 승인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사전지정운용방법을 본인이 적용 받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선정하였거나, 해당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운용되고 있는 가입자에게 제7조의2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통지해야 합니다.</p> <p>② 제1항에 따른 가입자 통지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합니다.</p> <p>1. 사전지정운용방법 변경 사유</p> <p>2. 변경된 사전지정운용방법에 관한 정보</p>	<p>사전지정운용 제도를 선정하지 않은 경우 가입자 적립금의 처리방법 규정</p> <p>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3조의4 신설</p>

현행	개정	개정사유
<p>&lt;신설&gt;</p>	<p>3. 변경 승인을 받은 후 14일이 지난날부터 가입자의 적립금이 변경된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따라 운용될 수 있다는 사실</p> <p>4.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 변경된 사전지정운용방법이 아닌 다른 운용방법을 선정할 수 있다는 사실</p> <p>5. 적립금이 변경된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된 이후에도 가입자는 언제든지 다른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할 수 있다는 사실</p> <p>③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가입자가 변경된 사전지정운용방법이 아닌 다른 운용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은행은 변경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날부터 가입자의 적립금을 변경된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따라 운용할 수 있습니다.</p> <p>④ 은행은 사전지정운용방법 변경으로 인해 가입자의 적립금 운용방법이 변경될 때 가입자에게 중도해지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p> <p><b>제7조의7(사전지정운용방법의 승인 취소에 따른 조치)</b></p> <p>① 은행의 사전지정운용방법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승인 취소된 경우, 은행은 해당 사전지정운용방법을 본인이 적용 받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선정하였거나, 해당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운용되고 있는 가입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즉시 통지해야 합니다.</p> <p>1. 승인 취소 사유</p> <p>2. 승인 취소된 사전지정운용방법의 해지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p> <p>3. 다른 사전지정운용방법을 포함한 3가지 이상의 운용방법에 관한 정보로서 법 제21의3 제1항 제1호 및 영 제13조의2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p> <p>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가입자가 다른 운용방법을 선정한 경우에는 가입자의 적립금을 가입자가 선정한 다른 운용방법으로 이전하여 운용해야 합니다.</p> <p>③ 제2항에 따라 적립금을 이전하여 운용하는 경우 은행은 적립금을 이전한 운용방법에 관한 정보로서 법 제21조의3 제1항 제1호 및 영 제</p>	<p>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3조의6 신설</p>

현행	개정	개정사유
<p>13조의2 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에 관한 정보를 가입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p> <p>④ 은행은 제1항 통지를 받은 가입자가 해당 사전지정운용방법을 해지하지 않거나 다른 운용방법을 선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입자의 적립금을 같은 위험등급의 다른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이전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p> <p>⑤ 제4항에 따라 적립금을 이전하여 운용하는 경우 은행은 해당 가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해야 합니다.</p> <p>1. 적립금을 이전하여 운용한다는 사실</p> <p>2. 적립금을 이전한 운용방법에 관한 정보로서 법 제21조의3 제1항 제1호 및 영 제13조의2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p> <p>⑥ 은행은 사전지정운용방법 취소로 인해 가입자의 적립금 운용방법이 변경될 때 가입자에게 중도해지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p> <p><b>제8조(적립금 운용방법의 선정 및 변경)</b></p> <p>① &lt;생략&gt;</p> <p>② 가입자는 사용자가 부담금을 자산관리기관에 입금하기 전까지 적립금 운용방법을 선정하여 은행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최초 가입시 운용방법을 정하지 않은 경우 은행은 기한을 정하여 가입자에게 운용지시를 하도록 통지합니다. <u>최초 부담금에 대한 운용지시가 없을 경우 규약에서 별도로 정한 운용방법에 따릅니다.</u></p> <p>③ 제2항에 따른 규약에서 별도로 정한 운용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자산관리계약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운용지시합니다.</p> <p>1. 보험계약은 원리금보장 운용방법 중 금리연동형</p> <p>2. 신탁계약은 대기자금 운용을 위해 자산관리기관이 제공하는 운용방법</p> <p>④ &lt;생략&gt;</p> <p>⑤ 은행은 제4항의 통지를 할 경우, “만기예정일(만기예정일을 포함하지 않습니다)의 2영업일 전까지 가입자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다음 운용지시가 있을 때까지 동일한 운용방법으로 자동 재예치되거나 자동 재예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3항에서 정한 운용방법(중도해</p>	<p>13조의2 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에 관한 정보를 가입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p> <p>④ 은행은 제1항 통지를 받은 가입자가 해당 사전지정운용방법을 해지하지 않거나 다른 운용방법을 선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입자의 적립금을 같은 위험등급의 다른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이전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p> <p>⑤ 제4항에 따라 적립금을 이전하여 운용하는 경우 은행은 해당 가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해야 합니다.</p> <p>1. 적립금을 이전하여 운용한다는 사실</p> <p>2. 적립금을 이전한 운용방법에 관한 정보로서 법 제21조의3 제1항 제1호 및 영 제13조의2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p> <p>⑥ 은행은 사전지정운용방법 취소로 인해 가입자의 적립금 운용방법이 변경될 때 가입자에게 중도해지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p> <p><b>제8조(적립금 운용방법의 선정 및 변경)</b></p> <p>① &lt;좌동&gt;</p> <p>② 가입자는 사용자가 부담금을 자산관리기관에 입금하기 전까지 적립금 운용방법을 선정하여 은행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최초 가입시 운용방법을 정하지 않은 경우 은행은 기한을 정하여 가입자에게 운용지시를 하도록 통지합니다. &lt;삭제&gt;</p> <p>③ &lt;삭제&gt;</p> <p>③ &lt;좌동&gt;</p> <p>④ 은행은 제3항의 통지를 할 경우, “만기예정일&lt;삭제&gt;의 직전 영업일 전까지 가입자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제7조의5에 따라 처리됩니다. 제7조의5를 적용함에 있어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용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가입자 적립금 운용은 상품 약관에 따릅니다. 다</p>	<p>운용지시가 없는 경우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용되므로 삭제</p> <p>원리금보장상품 재예치 폐지에 대한</p>

현행	개정	개정사유
<p>지수수료가 없고 수시 현금화가 가능하지만 금리가 낮은 운용방법)으로 운용하시 합니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p> <p>⑥ 제4항에 따라 가입자가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의 만기도래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내용의 통지를 법 제18조에 따른 적립금 운용현황 통지시 포함하여 통지하도록 합니다.</p> <p>⑦ &lt;생략&gt;</p> <p>⑧ &lt;생략&gt;</p> <p>&lt;신설&gt;</p> <p>제9~35조 &lt;생략&gt;</p> <p style="text-align: center;"><b>부 칙</b></p> <p>제1조 (시행일) 이 계약서는 202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합니다. 다만, 2022년 4월 14일부터 시행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내용은 2022년 4월 14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합니다.</p> <p>제2조 &lt;생략&gt;</p> <p>&lt;신설&gt;</p> <p>&lt;신설&gt;</p>	<p>만, 상품 약관에 별도의 약정사항이 없는 경우 현금성 자산로 운용됩니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한 내용대로 적립금을 운용하여야 합니다.</p> <p>⑤ 제3항에 따라 가입자가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의 만기도래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내용의 통지를 법 제18조에 따른 적립금 운용현황 통지시 포함하여 통지하도록 합니다.</p> <p>⑥ &lt;좌동&gt;</p> <p>⑦ &lt;좌동&gt;</p> <p>⑧ 복수의 상품으로 구성된 사전지정운용방법의 경우 구성상품을 개별적으로 매도할 수 없습니다.</p> <p>제9~35조 &lt;좌동&gt;</p> <p style="text-align: center;"><b>부 칙</b></p> <p>제1조(시행일) 이 계약서는 2022년 12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lt;삭제&gt;</p> <p>제2조 &lt;좌동&gt;</p> <p><u>제3조(자동재예치의 유효기간)</u> ① 법률 18752호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사전지정 운용방법을 지정하지 않은 가입자의 원리금보장형상품의 만기 예정일의 직전 영업일 전까지 가입자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다음 운용지시가 있을 때까지 동일한 운용방법으로 자동재예치됩니다. ② 제1항은 2023년 7월 11일까지 적용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선정한 경우라면 선정한 이후에는 제1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p> <p><u>제4조(규약상 자동운용상품 적용례)</u> 법률 18752호의 시행에 따라 연금계약에서 정하는 자동운용상품은 2022년 12월 2일부터 허용</p>	<p>인용조문 변경</p> <p>사전지정운용방법의 경우 포트폴리오단위 매도 규정</p> <p>시행일 변경</p> <p>원리금상품 자동재예치 금지 규정 및 유효기간 명시</p> <p>퇴직연금 규약상 상품미지정시 특정상품</p>

현 행	개 정	개정사유
<p>[별지1]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 부속협정서</p> <p>제1조~제3조 &lt;생략&gt;</p> <p>제4조(적립금자산의 매각순서)</p> <p>① 계약서 제16조에서 가입자가 사전에 적립금 자산의 매각순서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자산을 매각하는 것으로 합니다.</p> <p>1. MMF 2. 정기에·적금</p> <p>&lt;신설&gt;</p> <p>3. 집합투자증권(채권형) 4. 집합투자증권(채권혼합형) 5. 집합투자증권(주식혼합형) 6. 집합투자증권(주식형) 7. 이율보증형보험(GIC) 8. 파생결합사채(ELB)</p> <p>&lt;신설&gt;</p> <p>&lt;신설&gt;</p> <p>9. 실물유가증권(주식, 채권) 10. 제3호 내지 제6호의 집합투자증권에서 동일 유형&lt;신설&gt;의 경우 주식편입비율이 낮은 것을 우선순위로 합니다.</p> <p>11. 상기 각 호에서 정하지 아니한 자산이 있는 경우 은행은 가입자에게 손해가 가장 적은 방법을 택하여 매각하는 것으로 합니다.</p> <p>② &lt;생략&gt;</p> <p>[별지2]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교육위탁계약서 &lt;생략&gt;</p>	<p><u>되지 않습니다.</u></p> <p>[별지1]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 부속협정서</p> <p>제1조~제3조 &lt;좌동&gt;</p> <p>제4조(적립금자산의 매각순서)</p> <p>① 계약서 제16조에서 가입자가 사전에 적립금 자산의 매각순서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자산을 매각하는 것으로 합니다.</p> <p>1. MMF 2. 정기에·적금 3. <u>원리금보장상품으로만 구성된 사전지정운용방법</u> 4. 집합투자증권(채권형) 5. 집합투자증권(채권혼합형) 6. 집합투자증권(주식혼합형) 7. 집합투자증권(주식형) 8. 이율보증형보험(GIC) 9. 파생결합사채(ELB) 10. <u>원리금보장상품과 집합투자증권이 혼합 구성된 사전지정운용방법</u> 11. <u>집합투자증권으로만 구성된 사전지정운용방법</u> 12. 실물유가증권(주식, 채권) 13. <u>제4호 내지 제7호 또는 제10호 내지 제11호</u>의 집합투자증권에서 동일 유형<u>상품 또는 사전 지정운용방법</u>의 경우 주식편입비율이 낮은 것을 우선순위로 합니다.</p> <p>14. 상기 각 호에서 정하지 아니한 자산이 있는 경우 은행은 가입자에게 손해가 가장 적은 방법을 택하여 매각하는 것으로 합니다.</p> <p>② &lt;좌동&gt;</p> <p>[별지2]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교육위탁계약서 &lt;좌동&gt;</p>	<p>운용하도록 명시된 부분 법 시행으로 폐지</p> <p>제8조 제8항에 다른 포트폴리오 매각순서 신설 및 매도 방법 명시</p>

■ 표준형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및 부속협정서 개정대비표

[개정시행일 : 2022년 12월 2일, 기존 가입 손님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 적용]

현 행	개 정	개정사유
<p>표준형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p> <p>제1조 &lt;생략&gt;</p> <p>제2조(용어의 정의)</p> <p>①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p> <p>1~8. &lt;생략&gt;</p> <p>9. &lt;신설&gt;</p> <p>10. &lt;신설&gt;</p> <p>11. &lt;신설&gt;</p> <p>② &lt;생략&gt;</p> <p>제3조(운용관리업무)</p> <p>① 이 계약에 의해 은행이 수행하는 업무(이 계약에서 "운용관리업무"라 합니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로 합니다.</p> <p>1. 가입자에 대한 적립금 운용방법의 제시 및 운용방법별 정보의 제공</p> <p>&lt;신설&gt;</p> <p>2. 적립금 운용현황의 기록·보관·통지</p> <p>3. 가입자가 선정한 운용방법을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하는 업무</p> <p>4. 가입자의 급여지급 신청, 중도인출 신청을 자산관리기관에 통지하는 업무</p> <p>5. 그 밖에 시행령에서 운용관리업무로 정하는 업무</p> <p>② 은행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업무를 법령에서 정한 인적·물적 요건을 갖춘 자에게 위탁</p>	<p>표준형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p> <p>제1조 &lt;좌동&gt;</p> <p>제2조(용어의 정의)</p> <p>①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p> <p>1~8. &lt;좌동&gt;</p> <p>9. "사전지정운용제도"란 가입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 사전에 지정한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p> <p>10. "사전지정운용방법"이란 사전지정운용제도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하기 위하여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운용방법을 말합니다.</p> <p>11. "현금성 자산"이란 가입자가 제8조에 따른 운용지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 운용방법을 말하며, 자산관리계약에 형태에 따라 보험계약은 금리연동형, 신탁계약은 대기자금 운용을 위해 자산관리기관이 제공하는 운용방법을 말합니다.</p> <p>② &lt;좌동&gt;</p> <p>제3조(운용관리업무)</p> <p>① 이 계약에 의해 은행이 수행하는 업무(이 계약에서 "운용관리업무"라 합니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로 합니다.</p> <p>1. 가입자에 대한 적립금 운용방법의 제시 및 운용방법별 정보의 제공</p> <p>2. 사전지정운용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업무</p> <p>3. 적립금 운용현황의 기록·보관·통지</p> <p>4. 가입자가 선정한 운용방법을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하는 업무</p> <p>5. 가입자의 급여지급 신청, 중도인출 신청을 자산관리기관에 통지하는 업무</p> <p>6. 그 밖에 시행령에서 운용관리업무로 정하는 업무</p> <p>② 은행은 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를 법령에서 정한 인적·물적 요건을 갖춘 자에게 위탁</p>	<p>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 개정내용 반영</p> <p>현금성 자산의 정의 명확화</p> <p>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8조 개정내용 반영</p> <p>인용조문 변경</p>

현 행	개 정	개정사유
<p>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p> <p>③ &lt;생략&gt;</p> <p>제4~7조 &lt;생략&gt;</p> <p><u>&lt;신설&gt;</u></p>	<p>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p> <p>③ &lt;좌동&gt;</p> <p>제4~7조 &lt;좌동&gt;</p> <p><u>제7조의2(사용자에 대한 사전지정운영방법 정보 제공)</u></p> <p>① 은행은 법 제21조의2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전지정운영방법을 사용자에게 제시하여야 합니다.</p> <p>② 은행은 제1항에 따라 승인 받은 사전지정운영방법의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p> <p>③ 사용자는 은행이 제시한 사전지정운영방법에 대해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규약에 명시해야 합니다.</p> <p>④ 제2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제공하여야 합니다.</p> <p>1. 사전지정운영방법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자산배분현황, 위험·수익구조, 손실가능성 및 과거 수익률  나. 수수료 등 가입자가 부담하는 비용에 관한 사항  다. 예금자보호한도 등 가입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  라. 사전지정운영방법의 적용에 따른 퇴직연금자산의 위험도 변경 가능성  마. 사전지정운영방법의 승인일자 등 승인에 관한 사항</p> <p>2. 법 제21조의3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관한 사항</p> <p>3. 법 제21조의3제6항에 따라 사전지정운영방법이 변경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절차</p> <p>⑤ 은행은 사용자에게 제2항에 따른 사전지정운영방법의 정보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의 형태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합니다.</p> <p>1. 우편 발송  2. 서면 교부  3. 정보통신망에 의한 전송  4.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서 당사자가 합의한 방법</p>	<p>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1조의2, 제21조의3, 시행령 제13조의2, 시행규칙 제8조의4 신설</p>

현행	개정	개정사유
<p><u>&lt;신설&gt;</u></p>	<p><b>제7조의3(가입자에 대한 사전지정운용방법 정보 제공)</b>            ① 은행은 제7조의2 제3항에 따라 규약에 설정된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정보를 가입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② 은행은 제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제7조의2 제4항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하여야 하며, 동조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③ 은행이 제1항에 따른 정보제공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사용자는 가입자에 관한 정보를 은행에 제공해야 합니다.</p>	<p>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1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2 신설</p>
<p><u>&lt;신설&gt;</u></p>	<p><b>제7조의4(가입자의 사전지정운용방법 선정 및 변경)</b>            ① 가입자는 제7조의3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전지정운용방법 중 하나를 본인이 적용 받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합니다.            ② 가입자는 제1항에 따라 선정한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제7조의2 제3항에 따라 규약에 설정된 다른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도, 가입자별로 하나의 사전지정운용방법만 선정해야 합니다.            ③ 제1항에 따른 선정 여부를 불문하고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고 있지 않은 가입자는 은행이 법 제21조의2 제1항에 따라 승인 받은 사전지정운용방법 중 하나를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p>	<p>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1조의4 신설</p>
<p><u>&lt;신설&gt;</u></p>	<p><b>제7조의5(사전지정운용방법의 적용 및 통지)</b>            ① 은행은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선정한 가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 운용방법을 선정하지 않은 경우, 해당 가입자에게 지정한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따라 적립금이 운용됨을 통지해야 합니다.            1. 가입자가 이 제도에 가입하여 최초 부담금이 납입된 날의 다음 영업일            2. 가입자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스스로 선정한 적립금 운용방법의 기간 만료일부터 4주 경과한 날의 다음 영업일</p>	<p>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1조의3 제3~6항, 동법 시행령 제13조의3 신설</p>

현행	개정	개정사유
<p>&lt;신설&gt;</p>	<p>② 은행이 제1항에 따라 가입자에게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운용됨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통지하여야 합니다.</p> <p>1. 2주 이내에 운용방법을 선정하지 아니할 경우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된다는 사실</p> <p>2. 가입자가 선정한 사전지정운용방법에 관한 정보로서 제7조의2 제4항 각 호의 정보</p> <p>3.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된 이후 언제든지 제5항에 따라 다른 운용방법을 선정할 수 있다는 사실</p> <p>③ 가입자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 2주 이내에 운용방법을 선정하지 아니할 경우 은행은 해당 가입자의 적립금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하며, 이 경우 가입자가 스스로 운용방법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선정한 것으로 봅니다.</p> <p>④ 가입자가 제7조의4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선정하지 않은 경우 은행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합니다.</p> <p>1. 가입자가 이 제도에 가입하여 부담금을 납입한 경우 부담금 납입 다음영업일에 현금성 자산으로 투입</p> <p>2. 가입자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스스로 선정한 적립금 운용방법의 기간 만료일 다음 영업일에 현금성 자산으로 투입</p> <p>⑤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가입자는 언제든지 법 제21조에 따라 적립금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p> <p><b>제7조의6(은행의 사전지정운용방법 변경)</b></p> <p>① 은행은 법 제21조의3 제6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전지정운용방법의 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 그 사실을 변경 승인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사전지정운용방법을 본인이 적용 받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선정하였거나, 해당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운용되고 있는 가입자에게 제7조의2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통지해야 합니다.</p> <p>② 제1항에 따른 가입자 통지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합니다.</p> <p>1. 사전지정운용방법 변경 사유</p> <p>2. 변경된 사전지정운용방법에 관한 정보</p>	<p>사전지정운용 제도를 선정하지 않은 경우 가입자 적립금의 처리방법 규정</p> <p>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3조의4 신설</p>

현행	개정	개정사유
<p>&lt;신설&gt;</p>	<p>3. 변경 승인을 받은 후 14일이 지난날부터 가입자의 적립금이 변경된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따라 운용될 수 있다는 사실</p> <p>4.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 변경된 사전지정운용방법이 아닌 다른 운용방법을 선정할 수 있다는 사실</p> <p>5. 적립금이 변경된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된 이후에도 가입자는 언제든지 다른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할 수 있다는 사실</p> <p>③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가입자가 변경된 사전지정운용방법이 아닌 다른 운용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은행은 변경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날부터 가입자의 적립금을 변경된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따라 운용할 수 있습니다.</p> <p>④ 은행은 사전지정운용방법 변경으로 인해 가입자의 적립금 운용방법이 변경될 때 가입자에게 중도해지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p> <p><b>제7조의7(사전지정운용방법의 승인 취소에 따른 조치)</b></p> <p>① 은행의 사전지정운용방법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승인 취소된 경우, 은행은 해당 사전지정운용방법을 본인이 적용 받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선정하였거나, 해당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운용되고 있는 가입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즉시 통지해야 합니다.</p> <p>1. 승인 취소 사유</p> <p>2. 승인 취소된 사전지정운용방법의 해지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p> <p>3. 다른 사전지정운용방법을 포함한 3가지 이상의 운용방법에 관한 정보로서 법 제21의3 제1항 제1호 및 영 제13조의2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p> <p>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가입자가 다른 운용방법을 선정한 경우에는 가입자의 적립금을 가입자가 선정한 다른 운용방법으로 이전하여 운용해야 합니다.</p> <p>③ 제2항에 따라 적립금을 이전하여 운용하는 경우 은행은 적립금을 이전한 운용방법에 관한 정보로서 법 제21조의3 제1항 제1호 및 영 제</p>	<p>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3조의6 신설</p>

현행	개정	개정사유
<p>13조의2 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에 관한 정보를 가입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p> <p>④ 은행은 제1항 통지를 받은 가입자가 해당 사전지정운용방법을 해지하지 않거나 다른 운용방법을 선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입자의 적립금을 같은 위험등급의 다른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이전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p> <p>⑤ 제4항에 따라 적립금을 이전하여 운용하는 경우 은행은 해당 가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해야 합니다.</p> <p>1. 적립금을 이전하여 운용한다는 사실 2. 적립금을 이전한 운용방법에 관한 정보로서 법 제21조의3 제1항 제1호 및 영 제13조의2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p> <p>⑥ 은행은 사전지정운용방법 취소로 인해 가입자의 적립금 운용방법이 변경될 때 가입자에게 중도해지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p> <p><b>제8조(적립금 운용방법의 선정 및 변경)</b></p> <p>① &lt;생략&gt;</p> <p>② 가입자는 사용자가 부담금을 자산관리기관에 입금하기 전까지 적립금 운용방법을 선정하여 은행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최초 가입시 운용방법을 정하지 않은 경우 은행은 기한을 정하여 가입자에게 운용지시를 하도록 통지합니다. <u>최초 부담금에 대한 운용지시가 없을 경우 규약에서 별도로 정한 운용방법에 따릅니다.</u></p> <p>③ 제2항에 따른 규약에서 별도로 정한 운용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자산관리계약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운용지시합니다.</p> <p>1. 보험계약은 원리금보장 운용방법 중 금리연동형 2. 신탁계약은 대기자금 운용을 위해 자산관리기관이 제공하는 운용방법</p> <p>④ &lt;생략&gt;</p> <p>⑤ 은행은 제4항의 통지를 할 경우, “만기예정일(만기예정일을 포함하지 않습니다)의 2영업일 전까지 가입자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다음 운용지시가 있을 때까지 동일한 운용방법으로 자동 재예치되거나 자동 재예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3항에서 정한 운용방법(중도해</p>	<p>13조의2 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에 관한 정보를 가입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p> <p>④ 은행은 제1항 통지를 받은 가입자가 해당 사전지정운용방법을 해지하지 않거나 다른 운용방법을 선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입자의 적립금을 같은 위험등급의 다른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이전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p> <p>⑤ 제4항에 따라 적립금을 이전하여 운용하는 경우 은행은 해당 가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해야 합니다.</p> <p>1. 적립금을 이전하여 운용한다는 사실 2. 적립금을 이전한 운용방법에 관한 정보로서 법 제21조의3 제1항 제1호 및 영 제13조의2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p> <p>⑥ 은행은 사전지정운용방법 취소로 인해 가입자의 적립금 운용방법이 변경될 때 가입자에게 중도해지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p> <p><b>제8조(적립금 운용방법의 선정 및 변경)</b></p> <p>① &lt;좌동&gt;</p> <p>② 가입자는 사용자가 부담금을 자산관리기관에 입금하기 전까지 적립금 운용방법을 선정하여 은행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최초 가입시 운용방법을 정하지 않은 경우 은행은 기한을 정하여 가입자에게 운용지시를 하도록 통지합니다. <u>&lt;삭제&gt;</u></p> <p>③ &lt;삭제&gt;</p> <p>③ &lt;좌동&gt;</p> <p>④ 은행은 제3항의 통지를 할 경우, “만기예정일&lt;삭제&gt;의 직전 영업일 전까지 가입자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제7조의5에 따라 처리됩니다. 제7조의5를 적용함에 있어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용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가입자 적립금 운용은 상품 약관에 따릅니다. 다</p>	<p>운용지시가 없는 경우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용되므로 삭제</p> <p>원리금보장상품 재예치 폐지에 대한</p>

현 행	개 정	개정사유
<p>지수수료가 없고 수시 현금화가 가능하지만 금리가 낮은 운용방법)으로 운용하시 합니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p> <p>⑥ 제4항에 따라 가입자가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의 만기도래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내용의 통지를 법 제18조에 따른 적립금 운용현황 통지시 포함하여 통지하도록 합니다.</p> <p>⑦ &lt;생략&gt;</p> <p>⑧ &lt;생략&gt;</p> <p>&lt;신설&gt;</p> <p>제9~35조 &lt;생략&gt;</p> <p style="text-align: center;"><b>부 칙</b></p> <p>제1조 (시행일) 이 계약서는 202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합니다. 다만, 2022년 4월 14일부터 시행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내용은 2022년 4월 14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합니다.</p> <p>제2조 &lt;생략&gt;</p> <p>&lt;신설&gt;</p> <p>&lt;신설&gt;</p>	<p>만, 상품 약관에 별도의 약정사항이 없는 경우 현금성 자산로 운용됩니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한 내용대로 적립금을 운용하여야 합니다.</p> <p>⑤ 제3항에 따라 가입자가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의 만기도래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내용의 통지를 법 제18조에 따른 적립금 운용현황 통지시 포함하여 통지하도록 합니다.</p> <p>⑥ &lt;좌동&gt;</p> <p>⑦ &lt;좌동&gt;</p> <p>⑧ 복수의 상품으로 구성된 사전지정운용방법의 경우 구성상품을 개별적으로 매도할 수 없습니다.</p> <p>제9~35조 &lt;좌동&gt;</p> <p style="text-align: center;"><b>부 칙</b></p> <p>제1조(시행일) 이 계약서는 2022년 12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lt;삭제&gt;</p> <p>제2조 &lt;좌동&gt;</p> <p><b>제3조(자동재예치의 유효기간)</b></p> <p>① 법률 18752호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사전지정 운용방법을 지정하지 않은 가입자의 원리금보장형상품의 만기 예정일의 직전 영업일 전까지 가입자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다음 운용지시가 있을 때까지 동일한 운용방법으로 자동재예치됩니다.</p> <p>② 제1항은 2023년 7월 11일까지 적용합니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선정한 경우라면 선정한 이후에는 제1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p> <p><b>제4조(규약상 자동운용상품 적용례)</b></p> <p>법률 18752호의 시행에 따라 연금계약에서 정하는 자동운용상품은 2022년 12월 2일부터 허용</p>	<p>인용조문 변경</p> <p>사전지정운용방법의 경우 포트폴리오단위 매도 규정</p> <p>시행일 변경</p> <p>원리금상품 자동재예치 금지 규정 및 유효기간 명시</p> <p>퇴직연금 규약상 상품미지정시 특정상품</p>

현 행	개 정	개정사유
<p style="text-align: center;"><b>[별지1] 표준형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 부속협정서</b></p> <p>제1조~제3조 &lt;생략&gt;</p> <p><b>제4조(적립금자산의 매각순서)</b></p> <p>① 계약서 제16조에서 가입자가 사전에 적립금 자산의 매각순서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자산을 매각하는 것으로 합니다.</p> <p>1. MMF 2. 정기에·적금</p> <p><u>&lt;신설&gt;</u></p> <p>3. 집합투자증권(채권형) 4. 집합투자증권(채권혼합형) 5. 집합투자증권(주식혼합형) 6. 집합투자증권(주식형) 7. 이율보증형보험(GIC) 8. 파생결합사채(ELB)</p> <p><u>&lt;신설&gt;</u></p> <p><u>&lt;신설&gt;</u></p> <p>9. 실물유가증권(주식, 채권) 10. 제3호 내지 제6호의 집합투자증권에서 동일 유형 <u>&lt;신설&gt;</u>의 경우 주식편입비율이 낮은 것을 우선순위로 합니다.</p> <p>11. 상기 각 호에서 정하지 아니한 자산이 있는 경우 은행은 가입자에게 손해가 가장 적은 방법을 택하여 매각하는 것으로 합니다.</p> <p>② &lt;생략&gt;</p> <p style="text-align: center;"><b>[별지2] 표준형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교육위탁계약서 &lt;생략&gt;</b></p>	<p><u>되지 않습니다.</u></p> <p style="text-align: center;"><b>[별지1] 표준형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 부속협정서</b></p> <p>제1조~제3조 &lt;좌동&gt;</p> <p><b>제4조(적립금자산의 매각순서)</b></p> <p>① 계약서 제16조에서 가입자가 사전에 적립금 자산의 매각순서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자산을 매각하는 것으로 합니다.</p> <p>1. MMF 2. 정기에·적금 3. <u>원리금보장상품으로만 구성된 사전지정운용방법</u> <u>법</u> 4. 집합투자증권(채권형) 5. 집합투자증권(채권혼합형) 6. 집합투자증권(주식혼합형) 7. 집합투자증권(주식형) 8. 이율보증형보험(GIC) 9. 파생결합사채(ELB) 10. <u>원리금보장상품과 집합투자증권이 혼합 구성된 사전지정운용방법</u> 11. <u>집합투자증권으로만 구성된 사전지정운용방법</u> <u>법</u> 12. 실물유가증권(주식, 채권) 13. <u>제4호 내지 제7호 또는 제10호 내지 제11호</u>의 집합투자증권에서 동일 유형 <u>상품 또는 사전 지정운용방법</u>의 경우 주식편입비율이 낮은 것을 우선순위로 합니다.</p> <p>14. 상기 각 호에서 정하지 아니한 자산이 있는 경우 은행은 가입자에게 손해가 가장 적은 방법을 택하여 매각하는 것으로 합니다.</p> <p>② &lt;좌동&gt;</p> <p style="text-align: center;"><b>[별지2] 표준형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교육위탁계약서 &lt;좌동&gt;</b></p>	<p>운용하도록 명시된 부분 법 시행으로 폐지</p> <p>제8조 제8항에 다른 포트폴리오 매각순서 신설 및 매도 방법 명시</p>

■ 개인형(기업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및 부속협정서 개정대비표

[개정시행일 : 2022년 12월 2일, 기존 가입 손님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 적용]

현 행	개 정	개정사유
<p>개인형(기업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p> <p><b>제1조 &lt;생략&gt;</b></p> <p><b>제2조(용어의 정의)</b>                      ①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7. &lt;생략&gt;                      8. &lt;신설&gt;</p> <p>9. &lt;신설&gt;</p> <p>10. &lt;신설&gt;</p> <p>② &lt;생략&gt;</p> <p><b>제3조(운용관리업무)</b>                      ① 이 계약에 의해 은행이 수행하는 업무(이 계약에서 "운용관리업무"라 합니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로 합니다.                      1. 가입자에 대한 적립금 운용방법의 제시 및 운용방법별 정보의 제공                      &lt;신설&gt;</p> <p>2. 적립금 운용현황의 기록·보관·통지                      3. 가입자가 선정한 운용방법을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하는 업무                      4. 가입자의 급여지급 신청, 중도인출 신청을 자산관리기관에 통지하는 업무                      5. 그 밖에 시행령에서 운용관리업무로 정하는 업무</p> <p>② 은행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업무를 법령에서 정한 인적·물적 요건을 갖춘 자에게 위탁</p>	<p>개인형(기업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p> <p><b>제1조 &lt;좌동&gt;</b></p> <p><b>제2조(용어의 정의)</b>                      ①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7. &lt;좌동&gt;                      8. "사전지정운용제도"란 가입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 사전에 지정한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9. "사전지정운용방법"이란 사전지정운용제도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하기 위하여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운용방법을 말합니다.                      10. "'현금성 자산'이란 가입자가 제8조에 따른 운용지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 운용방법을 말하며, 자산관리계약에 형태에 따라 보험계약은 금리연동형, 신탁계약은 대기자금 운용을 위해 자산관리기관이 제공하는 운용방법을 말합니다.                      ② &lt;좌동&gt;</p> <p><b>제3조(운용관리업무)</b>                      ① 이 계약에 의해 은행이 수행하는 업무(이 계약에서 "운용관리업무"라 합니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로 합니다.                      1. 가입자에 대한 적립금 운용방법의 제시 및 운용방법별 정보의 제공                      2. 사전지정운용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업무                      3. 적립금 운용현황의 기록·보관·통지                      4. 가입자가 선정한 운용방법을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하는 업무                      5. 가입자의 급여지급 신청, 중도인출 신청을 자산관리기관에 통지하는 업무                      6. 그 밖에 시행령에서 운용관리업무로 정하는 업무</p> <p>② 은행은 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를 법령에서 정한 인적·물적 요건을 갖춘 자에게 위탁</p>	<p>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 개정내용 반영</p> <p>현금성 자산의 정의 명확화</p> <p>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8조 개정</p> <p>인용조문 변경</p>



현행	개정	개정사유
<p>&lt;신설&gt;</p>	<p>용 받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합니다.</p> <p>② 가입자는 제1항에 따라 선정한 사전지정운용방법을 다른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도, 가입자별로 하나의 사전지정운용방법만 선정해야 합니다.</p> <p>③ 제1항에 따른 선정 여부를 불문하고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고 있지 않은 가입자는 은행이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승인 받은 사전지정운용방법 중 하나를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p> <p><b>제7조의4(사전지정운용방법의 적용 및 통지)</b></p> <p>① 은행은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선정한 가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 운용방법을 선정하지 않은 경우, 해당 가입자에게 지정한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따라 적립금이 운용됨을 통지해야 합니다.</p> <p>1. 가입자가 이 제도에 가입하여 부담금이 납입된 날의 다음 영업일</p> <p>2. 가입자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스스로 선정한 적립금 운용방법의 기간 만료일부터 4주 경과한 날의 다음 영업일</p> <p>② 은행이 제1항에 따라 가입자에게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운용됨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통지하여야 합니다.</p> <p>1. 2주 이내에 운용방법을 선정하지 아니할 경우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된다는 사실</p> <p>2. 가입자가 선정한 사전지정운용방법에 관한 정보로서 제7조의2 제4항 각 호의 정보</p> <p>3.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된 이후 언제든지 제5항에 따라 다른 운용방법을 선정할 수 있다는 사실</p> <p>③ 가입자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 2주 이내에 운용방법을 선정하지 아니할 경우 은행은 해당 가입자의 적립금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하며, 이 경우 가입자가 스스로 운용방법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선정한 것으로 봅니다.</p> <p>④ 가입자가 제7조의3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선정하지 않은 경우 은행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합니다.</p>	<p>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1조의3 제3~6항, 동법 시행령 제13조의3 신설</p> <p>사전지정운용 제도를 선정하지 않은 경우</p>

현행	개정	개정사유
<p>&lt;신설&gt;</p>	<p>1. 가입자가 이 제도에 가입하여 부담금을 납입한 경우 부담금 납입 다음 영업일에 현금성 자산으로 투입</p> <p>2. 가입자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스스로 선정한 적립금 운용방법의 기간 만료일 다음 영업일에 현금성 자산으로 투입</p> <p>⑤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가입자는 언제든지 법 제21조에 따라 적립금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p> <p><b>제7조의5(은행의 사전지정운용방법 변경)</b></p> <p>① 은행은 법 제21조의3제6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전지정운용방법의 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 그 사실을 변경 승인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사전지정운용방법을 본인이 적용받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선정하였거나, 해당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운용되고 있는 가입자에게 제7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통지해야 합니다.</p> <p>② 제1항에 따른 가입자 통지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합니다.</p> <p>1. 사전지정운용방법 변경 사유</p> <p>2. 변경된 사전지정운용방법에 관한 정보</p> <p>3. 변경 승인을 받은 후 14일이 지난날부터 가입자의 적립금이 변경된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따라 운용될 수 있다는 사실</p> <p>4.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 변경된 사전지정운용방법이 아닌 다른 운용방법을 선정할 수 있다는 사실</p> <p>5. 적립금이 변경된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된 이후에도 가입자는 언제든지 다른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할 수 있다는 사실</p> <p>③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가입자가 변경된 사전지정운용방법이 아닌 다른 운용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은행은 변경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날부터 가입자의 적립금을 변경된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따라 운용할 수 있습니다.</p> <p>④ 은행은 사전지정운용방법 변경으로 인해 가입자의 적립금 운용방법이 변경될 때 가입자에게 중도해지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p>	<p>가입자 적립금의 처리방법 규정</p> <p>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3조의4 신설</p>

현행	개정	개정사유
<p><u>&lt;신설&gt;</u></p>	<p><u>제7조의6(사전지정운용방법의 승인 취소에 따른 조치)</u></p> <p>① 은행의 사전지정운용방법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승인 취소된 경우, 은행은 해당 사전지정운용방법을 본인이 적용 받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선정하였거나, 해당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운용되고 있는 가입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즉시 통지해야 합니다.</p> <p>1. 승인 취소 사유</p> <p>2. 승인 취소된 사전지정운용방법의 해지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p> <p>3. 다른 사전지정운용방법을 포함한 3가지 이상의 운용방법에 관한 정보로서 법 제21의3제1항 제1호 및 영 제13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p> <p>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가입자가 다른 운용방법을 선정한 경우에는 가입자의 적립금을 가입자가 선정한 다른 운용방법으로 이전하여 운용해야 합니다.</p> <p>③ 제2항에 따라 적립금을 이전하여 운용하는 경우 은행은 적립금을 이전한 운용방법에 관한 정보로서 법 제21조의3제1항제1호 및 영 제13조의2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에 관한 정보를 가입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p> <p>④ 은행은 제1항 통지를 받은 가입자가 해당 사전지정운용방법을 해지하지 않거나 다른 운용방법을 선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입자의 적립금을 같은 위험등급의 다른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이전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p> <p>⑤ 제4항에 따라 적립금을 이전하여 운용하는 경우 은행은 해당 가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해야 합니다.</p> <p>1. 적립금을 이전하여 운용한다는 사실</p> <p>2. 적립금을 이전한 운용방법에 관한 정보로서 법 제21조의3제1항제1호 및 영 제13조의2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p> <p>⑥ 은행은 사전지정운용방법 취소로 인해 가입자의 적립금 운용방법이 변경될 때 가입자에게 중도해지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p>	<p>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3조의6 신설</p>

현 행	개 정	개정사유
<p><b>제8조 (적립금 운용방법의 선정 및 변경)</b>            ①~③ &lt;생략&gt;            ④ 은행은 제3항의 통지를 할 경우, "<u>만기예정일(만기예정일을 포함하지 않습니다)의 2영업일 전까지</u> 가입자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다음 운용지시가 있을 때까지 동일한 운용방법으로 자동 재예치되거나 자동 재예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자산관리계약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운용방법(중도해지수수료가 없고 수시 현금화가 가능하지만 금리가 낮은 운용방법)으로 운용지시 합니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p> <p>1. 보험계약은 원리금보장 운용방법 중 금리연동형            2. 신탁계약은 대기자금 운용을 위해 자산관리기관이 제공하는 운용방법</p> <p>⑤~⑦ &lt;생략&gt;            ⑧ &lt;신설&gt;</p>	<p><b>제8조(적립금 운용방법의 선정 및 변경)</b>            ①~③ &lt;좌동&gt;            ④ 은행은 제3항의 통지를 할 경우, "<u>만기예정일&lt;삭제&gt;의 직전 영업일 전까지</u> 가입자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u>제7조의4가 적용되며, 만기 이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운용되기 전까지</u> 가입자의 적립금 운용은 개별 상품 약관에 따릅니다. 다만, 상품 약관에 별도의 약정사항이 없는 경우 현금성 자산으로 운용됩니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한 내용대로 적립금을 운용하여야 합니다.</p> <p>1. &lt;삭제&gt;            2. &lt;삭제&gt;</p> <p>⑤~⑦ &lt;좌동&gt;            ⑧ <u>복수의 상품으로 구성된 사전지정운용방법의 경우 구성상품을 개별적으로 매도할 수 없습니다.</u></p>	<p>운용지시가 없는 경우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용됨을 명시</p> <p>사전지정운용방법의 경우 포트폴리오단위 매도 규정</p>
<p><b>제9~31조 &lt;생략&gt;</b></p> <p style="text-align: center;"><b>부 칙</b></p> <p><b>제1조(시행일)</b>            이 계약서는 <u>2022년 7월 22일</u>부터 시행합니다. 다만, <u>2022년 4월 14일</u>부터 시행된 <u>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내용은 2022년 4월 14일</u>부터 소급하여 시행합니다.</p> <p><b>제2조 &lt;생략&gt;</b></p> <p><b>제3조 &lt;신설&gt;</b></p>	<p><b>제9~31조 &lt;좌동&gt;</b></p> <p style="text-align: center;"><b>부 칙</b></p> <p><b>제1조(시행일)</b>            이 계약서는 <u>2022년 12월 2일</u>부터 시행합니다. &lt;삭제&gt;</p> <p><b>제2조 &lt;좌동&gt;</b></p> <p><b>제3조(자동재예치의 유효기간)</b>            ① <u>법률 18752호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지정하지 않은 가입자의 원리금보장형상품의 만기 예정일의 직전 영업일 전까지</u> 가입자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다음 운용지시가 있을 때까지 동일한 운용방법으로 자동재예치됩니다.            ② 제1항은 2023년 7월 11일까지 적용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사전</p>	<p>시행일 변경</p> <p>원리금상품 자동재예치 금지 규정 및 유효기간 명시</p>

현 행	개 정	개정사유
<p>[별지1] 개인형(기업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 부속협정서</p> <p>제1조~제3조 &lt;생략&gt;</p> <p>제4조(적립금자산의 매각순서)</p> <p>① 계약서 제15조에서 가입자가 사전에 적립금 자산의 매각순서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대로 자산을 매각하는 것으로 합니다.</p> <p>1. MMF 2. 정기예·적금</p> <p>&lt;신설&gt;</p> <p>3. 집합투자증권(채권형) 4. 집합투자증권(채권혼합형) 5. 집합투자증권(주식혼합형) 6. 집합투자증권(주식형) 7. 이율보증형보험(GIC) 8. 파생결합사채(ELB)</p> <p>&lt;신설&gt;</p> <p>&lt;신설&gt;</p> <p>9. 실물유가증권(주식, 채권) 10. 제3호 내지 제6호의 집합투자증권에서 동일 유형 &lt;신설&gt;의 경우 주식편입비율이 낮은 것을 우선순위로 합니다.</p> <p>11. 상기 각 호에서 정하지 아니한 자산이 있는 경우 은행은 가입자에게 손해가 가장 적은 방법을 택하여 매각하는 것으로 합니다.</p> <p>② &lt;생략&gt;</p> <p>제5조 &lt;생략&gt;</p>	<p><u>지정운용방법을 선정한 경우라면 선정한 이후에는 제1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u></p> <p>[별지1] 개인형(기업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 부속협정서</p> <p>제1조~제3조 &lt;좌동&gt;</p> <p>제4조(적립금자산의 매각순서)</p> <p>① 계약서 제15조에서 가입자가 사전에 적립금 자산의 매각순서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자산을 매각하는 것으로 합니다.</p> <p>1. MMF 2. 정기예·적금 3. <u>원리금보장상품으로만 구성된 사전지정운용방법</u> 4. 집합투자증권(채권형) 5. 집합투자증권(채권혼합형) 6. 집합투자증권(주식혼합형) 7. 집합투자증권(주식형) 8. 이율보증형보험(GIC) 9. 파생결합사채(ELB) 10. <u>원리금보장상품과 집합투자증권이 혼합 구성된 사전지정운용방법</u> 11. <u>집합투자증권으로만 구성된 사전지정운용방법</u> 12. 실물유가증권(주식, 채권) 13. <u>제4호 내지 제7호 또는 제10호 내지 제11호의 집합투자증권에서 동일 유형상품 또는 사전 지정운용방법</u>의 경우 주식편입비율이 낮은 것을 우선순위로 합니다.</p> <p>14. 상기 각 호에서 정하지 아니한 자산이 있는 경우 은행은 가입자에게 손해가 가장 적은 방법을 택하여 매각하는 것으로 합니다.</p> <p>② &lt;좌동&gt;</p> <p>제5조 &lt;좌동&gt;</p>	<p>제8조 제8항에 따른 포트폴리오 매각순서 신설 및 매도 방법 명시</p>

■ 개인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및 부속협정서 개정대비표

[개정시행일 : 2022년 12월 2일, 기존 가입 손님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 적용]

현 행	개 정	개정사유
<p style="text-align: center;"><b>개인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b></p> <p><b>제1조 &lt;생략&gt;</b></p> <p><b>제2조(용어의 정의)</b>                      ①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7. &lt;생략&gt;  <u>8. &lt;신설&gt;</u></p> <p><u>9. &lt;신설&gt;</u></p> <p><u>10. &lt;신설&gt;</u></p> <p>② &lt;생략&gt;</p> <p><b>제3조(운용관리업무)</b>                      ① 이 계약에 의해 은행이 수행하는 업무(이 계약에서 "운용관리업무"라 합니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로 합니다.                      1. 가입자에 대한 적립금 운용방법의 제시 및 운용방법별 정보의 제공  <u>&lt;신설&gt;</u></p> <p><u>2. 적립금 운용현황의 기록·보관·통지</u>  <u>3. 가입자가 선정한 운용방법을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하는 업무</u>  <u>4. 가입자의 급여지급 신청, 중도인출 신청을 자산관리기관에 통지하는 업무</u>  <u>5. 그 밖에 시행령에서 운용관리업무로 정하는 업무</u></p> <p>② 은행은 제1항제2호 및 <u>제3호</u>의 업무를 법령에서 정한 인적·물적 요건을 갖춘 자에게 위탁</p>	<p style="text-align: center;"><b>개인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b></p> <p><b>제1조 &lt;좌동&gt;</b></p> <p><b>제2조(용어의 정의)</b>                      ①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7. &lt;좌동&gt;  <u>8. "사전지정운용제도"란 가입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 사전에 지정한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u>  <u>9. "사전지정운용방법"이란 사전지정운용제도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하기 위하여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운용방법을 말합니다.</u>  <u>10. "현금성 자산"이란 가입자가 제8조에 따른 운용지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 운용방법을 말하며, 자산관리계약에 형태에 따라 보험계약은 금리연동형, 신탁계약은 대기자금 운용을 위해 자산관리기관이 제공하는 운용방법을 말합니다.</u></p> <p>② &lt;좌동&gt;</p> <p><b>제3조(운용관리업무)</b>                      ① 이 계약에 의해 은행이 수행하는 업무(이 계약에서 "운용관리업무"라 합니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로 합니다.                      1. 가입자에 대한 적립금 운용방법의 제시 및 운용방법별 정보의 제공  <u>2. 사전지정운용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업무</u>  <u>3. 적립금 운용현황의 기록·보관·통지</u>  <u>4. 가입자가 선정한 운용방법을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하는 업무</u>  <u>5. 가입자의 급여지급 신청, 중도인출 신청을 자산관리기관에 통지하는 업무</u>  <u>6. 그 밖에 시행령에서 운용관리업무로 정하는 업무</u></p> <p>② 은행은 제1항제2호 및 <u>제4호</u>의 업무를 법령에서 정한 인적·물적 요건을 갖춘 자에게 위탁</p>	<p>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 개정내용 반영</p> <p>현금성 자산의 정의 명확화</p> <p>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8조 개정</p> <p>인용조문 변경</p>



현행	개정	개정사유
<p>&lt;신설&gt;</p>	<p>용 받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합니다.</p> <p>② 가입자는 제1항에 따라 선정한 사전지정운용방법을 다른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도, 가입자별로 하나의 사전지정운용방법만 선정해야 합니다.</p> <p>③ 제1항에 따른 선정 여부를 불문하고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고 있지 않은 가입자는 은행이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승인 받은 사전지정운용방법 중 하나를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p> <p><b>제7조의4(사전지정운용방법의 적용 및 통지)</b></p> <p>① 은행은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선정한 가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 운용방법을 선정하지 않은 경우, 해당 가입자에게 지정한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따라 적립금이 운용됨을 통지해야 합니다.</p> <p>1. 가입자가 이 제도에 가입하여 부담금을 납입한 날의 다음 영업일</p> <p>2. 가입자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스스로 선정한 적립금 운용방법의 기간 만료일부터 4주 경과한 날의 다음 영업일</p> <p>② 은행이 제1항에 따라 가입자에게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운용됨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통지하여야 합니다.</p> <p>1. 2주 이내에 운용방법을 선정하지 아니할 경우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된다는 사실</p> <p>2. 가입자가 선정한 사전지정운용방법에 관한 정보로서 제7조의2 제4항 각 호의 정보</p> <p>3.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된 이후 언제든지 제5항에 따라 다른 운용방법을 선정할 수 있다는 사실</p> <p>③ 가입자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 2주 이내에 운용방법을 선정하지 아니할 경우 은행은 해당 가입자의 적립금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하며, 이 경우 가입자가 스스로 운용방법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선정한 것으로 봅니다.</p> <p>④ 가입자가 제7조의3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선정하지 않은 경우 은행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합니다.</p>	<p>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1조의3 제3~6항, 동법 시행령 제13조의3 신설</p> <p>사전지정운용 제도를 선정하지 않은 경우</p>

현행	개정	개정사유
<p>&lt;신설&gt;</p>	<p>1. 가입자가 이 제도에 가입하여 부담금을 납입한 경우 부담금 납입 다음 영업일에 현금성 자산으로 투입</p> <p>2. 가입자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스스로 선정한 적립금 운용방법의 기간 만료일 다음 영업일에 현금성 자산으로 투입</p> <p>⑤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가입자는 언제든지 법 제21조에 따라 적립금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p> <p><b>제7조의5(은행의 사전지정운용방법 변경)</b></p> <p>① 은행은 법 제21조의3제6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전지정운용방법의 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 그 사실을 변경 승인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사전지정운용방법을 본인이 적용받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선정하였거나, 해당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운용되고 있는 가입자에게 제7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통지해야 합니다.</p> <p>② 제1항에 따른 가입자 통지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합니다.</p> <p>1. 사전지정운용방법 변경 사유</p> <p>2. 변경된 사전지정운용방법에 관한 정보</p> <p>3. 변경 승인을 받은 후 14일이 지난날부터 가입자의 적립금이 변경된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따라 운용될 수 있다는 사실</p> <p>4.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 변경된 사전지정운용방법이 아닌 다른 운용방법을 선정할 수 있다는 사실</p> <p>5. 적립금이 변경된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된 이후에도 가입자는 언제든지 다른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할 수 있다는 사실</p> <p>③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가입자가 변경된 사전지정운용방법이 아닌 다른 운용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은행은 변경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날부터 가입자의 적립금을 변경된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따라 운용할 수 있습니다.</p> <p>④ 은행은 사전지정운용방법 변경으로 인해 가입자의 적립금 운용방법이 변경될 때 가입자에게 중도해지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p>	<p>가입자 적립금의 처리방법 규정</p> <p>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3조의4 신설</p>

현행	개정	개정사유
<p><u>&lt;신설&gt;</u></p>	<p><u>제7조의6(사전지정운용방법의 승인 취소에 따른 조치)</u></p> <p>① 은행의 사전지정운용방법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승인 취소된 경우, 은행은 해당 사전지정운용방법을 본인이 적용 받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선정하였거나, 해당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운용되고 있는 가입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즉시 통지해야 합니다.</p> <p>1. 승인 취소 사유</p> <p>2. 승인 취소된 사전지정운용방법의 해지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p> <p>3. 다른 사전지정운용방법을 포함한 3가지 이상의 운용방법에 관한 정보로서 법 제21의3제1항제1호 및 영 제13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p> <p>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가입자가 다른 운용방법을 선정한 경우에는 가입자의 적립금을 가입자가 선정한 다른 운용방법으로 이전하여 운용해야 합니다.</p> <p>③ 제2항에 따라 적립금을 이전하여 운용하는 경우 은행은 적립금을 이전한 운용방법에 관한 정보로서 법 제21조의3제1항제1호 및 영 제13조의2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에 관한 정보를 가입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p> <p>④ 은행은 제1항 통지를 받은 가입자가 해당 사전지정운용방법을 해지하지 않거나 다른 운용방법을 선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입자의 적립금을 같은 위험등급의 다른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이전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p> <p>⑤ 제4항에 따라 적립금을 이전하여 운용하는 경우 은행은 해당 가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해야 합니다.</p> <p>1. 적립금을 이전하여 운용한다는 사실</p> <p>2. 적립금을 이전한 운용방법에 관한 정보로서 법 제21조의3제1항제1호 및 영 제13조의2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p> <p>⑥ 은행은 사전지정운용방법 취소로 인해 가입자의 적립금 운용방법이 변경될 때 가입자에게 중도해지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p>	<p>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3조의6 신설</p>

현행	개정	개정사유
<p><b>제8조 (적립금 운용방법의 선정 및 변경)</b>            ①~③ &lt;생략&gt;            ④ 은행은 제3항의 통지를 할 경우, "<u>만기예정일(만기예정일을 포함하지 않습니다)의 2영업일 전까지</u> 가입자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다음 운용지시가 있을 때까지 동일한 운용방법으로 자동 재예치되거나 자동 재예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자산관리계약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운용방법(중도해지수수료가 없고 수시 현금화가 가능하지만 금리가 낮은 운용방법)으로 운용지시 합니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p> <p>1. 보험계약은 원리금보장 운용방법 중 금리연동형            2. 신탁계약은 대기자금 운용을 위해 자산관리기관이 제공하는 운용방법</p> <p>⑤~⑦ &lt;생략&gt;            ⑧ &lt;신설&gt;</p>	<p><b>제8조(적립금 운용방법의 선정 및 변경)</b>            ①~③ &lt;좌동&gt;            ④ 은행은 제3항의 통지를 할 경우, "<u>만기예정일&lt;삭제&gt;의 직전 영업일 전까지</u> 가입자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u>제7조의4가 적용되며, 만기 이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운용되기 전까지</u> 가입자의 적립금 운용은 개별 상품 약관에 따릅니다. 다만, 상품 약관에 별도의 약정사항이 없는 경우 현금성 자산으로 운용됩니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한 내용대로 적립금을 운용하여야 합니다.</p> <p>1. &lt;삭제&gt;            2. &lt;삭제&gt;</p> <p>⑤~⑦ &lt;좌동&gt;            ⑧ 복수의 상품으로 구성된 사전지정운용방법의 경우 구성상품을 개별적으로 매도할 수 없습니다.</p>	<p>운용지시가 없는 경우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용됨을 명시</p> <p>사전지정운용방법의 경우 포트폴리오단위 매도 규정</p>
<p>제9~31조 &lt;생략&gt;</p> <p style="text-align: center;"><b>부 칙</b></p> <p><b>제1조(시행일)</b>            이 계약서는 <u>2022년 7월 22일</u>부터 시행합니다. 다만, <u>2022년 4월 14일</u>부터 시행된 <u>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내용은 2022년 4월 14일</u>부터 소급하여 시행합니다.</p> <p><b>제2조 &lt;생략&gt;</b></p> <p><b>제3조 &lt;신설&gt;</b></p>	<p>제9~31조 &lt;좌동&gt;</p> <p style="text-align: center;"><b>부 칙</b></p> <p><b>제1조(시행일)</b>            이 계약서는 <u>2022년 12월 2일</u>부터 시행합니다. &lt;삭제&gt;</p> <p><b>제2조 &lt;좌동&gt;</b></p> <p><b>제3조(자동재예치의 유효기간)</b>            ① 법률 18752호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u>사전지정운용방법을 지정하지 않은 가입자의 원리금보장형상품의 만기 예정일의 직전 영업일 전까지</u> 가입자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다음 운용지시가 있을 때까지 동일한 운용방법으로 자동재예치됩니다.            ② 제1항은 2023년 7월 11일까지 적용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사전</p>	<p>시행일 변경</p> <p>원리금상품 자동재예치 금지 규정 및 유효기간 명시</p>

현 행	개 정	개정사유
<p style="text-align: center;"><b>[별지1] 개인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 부속협정서</b></p> <p><b>제1조~제3조 &lt;생략&gt;</b></p> <p><b>제4조(적립금자산의 매각순서)</b>          ① 계약서 제15조에서 가입자가 사전에 적립금 자산의 매각순서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자산을 매각하는 것으로 합니다.          1. MMF          2. 정기예·적금  <u>&lt;신설&gt;</u>          3. 집합투자증권(채권형)          4. 집합투자증권(채권혼합형)          5. 집합투자증권(주식혼합형)          6. 집합투자증권(주식형)          7. 이율보증형보험(GIC)          8. 파생결합사채(ELB)  <u>&lt;신설&gt;</u>  <u>&lt;신설&gt;</u>          9. 실물유가증권(주식, 채권)          10. 제3호 내지 제6호의 집합투자증권에서 동일 유형 <u>&lt;신설&gt;</u>의 경우 주식편입비율이 낮은 것을 우선순위로 합니다.          11. 상기 각 호에서 정하지 아니한 자산이 있는 경우 은행은 가입자에게 손해가 가장 적은 방법을 택하여 매각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lt;생략&gt;</p> <p><b>제5조 &lt;생략&gt;</b></p>	<p style="text-align: center;"><b>[별지1] 개인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 부속협정서</b></p> <p><b>제1조~제3조 &lt;좌동&gt;</b></p> <p><b>제4조(적립금자산의 매각순서)</b>          ① 계약서 제15조에서 가입자가 사전에 적립금 자산의 매각순서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자산을 매각하는 것으로 합니다.          1. MMF          2. 정기예·적금          3. <u>원리금보장상품으로만 구성된 사전지정운용방법</u>          4. 집합투자증권(채권형)          5. 집합투자증권(채권혼합형)          6. 집합투자증권(주식혼합형)          7. 집합투자증권(주식형)          8. 이율보증형보험(GIC)          9. 파생결합사채(ELB)          10. <u>원리금보장상품과 집합투자증권이 혼합 구성된 사전지정운용방법</u>          11. <u>집합투자증권으로만 구성된 사전지정운용방법</u>          12. 실물유가증권(주식, 채권)          13. 제4호 내지 제7호 또는 제10호 내지 제11호의 집합투자증권에서 동일 유형 <u>상품 또는 사전 지정운용방법</u>의 경우 주식편입비율이 낮은 것을 우선순위로 합니다.          14. 상기 각 호에서 정하지 아니한 자산이 있는 경우 은행은 가입자에게 손해가 가장 적은 방법을 택하여 매각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lt;좌동&gt;</p> <p><b>제5조 &lt;좌동&gt;</b></p>	<p>제8조 제8항에 따른 포트폴리오 매각순서 신설 및 매도 방법 명시</p>